

#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38
----------	------

2014년 3월 4일  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2월 21일, 김생환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14년 2월 26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4년 2월 27일 상정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생환)

- 2013년 6월 3일에 개정된 「영유아보육법」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,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고, 시설 보육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한 종합적 보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확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보완·개정하고자 함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양재대)

#### 1) 개요

-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「영유아보육법」이 시행('13. 12. 5.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의 명칭 및 기능 변경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#### 2) 일부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2013년 6월 4일에 개정된 「영유아보육법」의 주요내용은, “보육정보센터”가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명칭이 변경되고, 그 기능도 기존의 시설보육지원 위주에서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기능(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,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,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)이 추가 되었음.
- 당시 법 개정취지는 보육정보센터가 어린이집 정보제공,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및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임.

## 〈상위법령 개정 내용〉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영유아 보육법 제7조	제7조(보육정보센터)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중앙보육정보센터</u> 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지방보육정보센터</u> 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<u>보육정보센터</u> 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~ ④<생략>	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--- <u>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</u> 를, -----특별자치시장·도지사----- ----- --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----- -----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----- ② ~ ④<생략>
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3조	제13조(보육정보센터의 기능) ①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(이하 “각 보육정보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</li> <li>2.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(教具)의 제공 또는 대여</li> <li>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</li> <li>4.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, 상담 및 교육</li> <li>5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(脆弱保育)에 대한 정보의 제공</li> <li>6.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7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 ② <생략>	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각 육아종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----- 1.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. ----- 2. ----- ----- 3. ----- ----- 4. ----- ----- 5. ----- ----- 6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 7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. ----- ----- ② <생략>

○ 이 개정안은 상기 법개정 사항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- 이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, 시민으로 하여금 조례 해석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,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참고로,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상기 법개정 이전부터,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보육시설지원 위주의 업무에 치중해왔던 점을 고려하여 재가아동지원을 위한 영유아플라자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고, 이러한 사례는 상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선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, 이처럼 우리시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끄는 사례는 향후에도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모범적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됨.

〈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비교〉

구 분	보육정보센터	영유아플라자
설립근거	영유아보육법 제7조	서울시 보육조례 제10조 행정1부시장 방침(2007.7.11.)
설립현황	25개소(자치구별 1개소)	25개소(자치구별 1개소)
주요기능	육아정보제공, 어린이집 지원, 부모지원, 육아상담 등	가정에 키우는 아동 및 부모 대상 육아지원종합 서비스 제공(육아카페, 체험학습, 육아상담, 교육기능)
운영방식	민간위탁 23개, 도시관리공단 1개(성북) 직영 1개소(강동)	민간위탁 23개, 도시관리공단 1개(성북) 직영 1개소(강동)

<별첨자료>

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

연번	센터명	주소	위탁체	최초개소일	종사자(명)	14년예산(천원)		
						계	시비	구비
1	서울시	중구서소문동 5-1	(학)숙명학원	1999.01.	11	562,649	562,649 (국60,000)	183,107
2	종로구	종로구 통일로 18길 64 (무악동)	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	2009.11.23	10	275,044	91,937	183,107
3	중 구	중구 다산로 32길 5 (신당동 292-60)	동국대학교	2011.12.01	15	509,210	91,937	417,273
4	용산구	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(이태원동)	학교법인 숙명학원 (숙명여자대학교)	2012.01.16	3	171,874	91,937	79,937
5	성동구	성동구 아차산로 107. 3층(성수동2가)	학교법인 한양학원	2005.12.22	10	422,886	91,937	330,949
6	광진구	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 (군자동)	사단법인 나눔복지재단	2009.12.29	9	303,839	91,937	211,902
7	동대문	동대문구 황물로 62 (답십리동)	학교법인 경희학원 (경희대학교)	2009.11.17	15	483,874	91,937	391,937
8	중랑구	중랑구 중랑역로 3길 28 (중화동)	서일대학교	2010.12.01	6	244,320	91,937	152,383
9	성북구	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(하월곡동 222-6)	성북구도시관리공단	2009.07.01	35	298,813	91,937	206,876
10	강북구	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(수유동 410-293)	한양대학교	2012.06.13	13	546,393	91,937	454,456
11	도봉구	도봉구 방학로 12길 28 (방학동 306-10)	학교법인 덕성학원 (덕성여자대학교)	2006.03.29	15	636,340	91,937	544,403
12	노원구	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,4동 공공복합청사 4층 (상계동)	한국복음주의학원 (한국성서대학교)	2008.07.15	16	493,874	91,937	401,937
13	은평구	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 (구산동)	명지대학교	2010.07.22	7	364,249	91,937	272,312
14	서대문	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권선소 별관 우리들 1층 (홍은동 425-3번지)	연세대학교	2011.03.01	6	321,993	91,937	230,056
15	마포구	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 (상암동 1686)	이화여자대학교	2010.02.22	18	855,915	91,937	763,978
16	양천구	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 (신정동)	그리스도대학교	2011.03.02	5	208,953	91,937	117,016
17	강서구	강서구 수명로 2길 50 (내발산동)	그리스도대학교	2009.12.29	6	312,296	91,937	220,359
18	구로구	구로구 가미산로 203 우리은행 구로동지점 3층 (구로동)	사회복지법인 가톨릭사회복지회	2010.09.01	4	206,874	91,937	114,937
19	금천구	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(시흥동)	그리스도대학교	2007.09.01	9	291,317	91,937	199,380
20	영등포	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 (신길4동 232-20)	중앙대학교	2009.02.25	4	233,801	91,937	141,864
21	동작구	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(대방동 385-2 3층)	동작복지재단	2006.12.29	12	588,453	91,937	496,516
22	관악구	관악구 쑥고개로 128 2~3층 (봉천동)	학교법인 일송학원 한림대학교	1999.08.02	8	392,282	91,937	300,345
23	서초구	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 (서초동)	이화여자대학교	2008.04.11	14	690,343	91,937	598,406
24	강남구	강남구 삼성로 72길 7 (대치동 961-17)	학교법인 경희학원 (경희대학교)	2006.09.01	25	1,121,608	91,937	1,029,671
25	송파구	송파구 중대로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(오금동 50번지)	(사)월드유스비전	2010.09.30	9	191,349	91,937	99,412
26	강동구	강동구 성내로 6길 16 (성내동 556-1)	강동구청 직영	2007.05.02	50	944,168	91,937	852,231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생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3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4년 2월 21일

발 의 자 : 김생환 의원  
찬 성 자 : 김기옥 · 고만규 · 김상현 · 강태  
회  
정세환 · 임형균 · 이순자 · 김정  
태 오승록 · 김기만 의원 (10명)

## 1. 제안이유

2013년 6월 3일에 개정된 「영유아보육법」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,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고, 시설 보육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한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확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보완 ·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 함(안 제5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, 안 제12조, 안 제13조, 안 제18조).
- 나.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임시보육 서비스,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 함(안 제12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3장 “보육정보센터 등”을 “육아종합지원센터 등”으로 한다

제10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(이하 “보육정보센터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, “제7호까지”를 “제9호까지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, 제2항 및 같은조 제4항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4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5조(기능)</b>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<u>보육정보센터</u>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li> </ol> <p><b>제3장 보육정보센터 등 (개정 2008.11.13.)</b></p>	<p><b>제5조(기능)</b>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3.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-----</li> <li>5.~8.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<b>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</b></p>
<p><b>제10조(설치 및 운영)</b>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</u>(이하 "보육정보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(개정 2005.09.30, 2009.11.11)</p>	<p><b>제10조(설치 및 운영)</b> ①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</u>(이하"육아종합지원센터"라한다)-----</p>
<p><b>제11조(설치기준)</b> ① <u>보육정보센터</u>의 설치기준은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른다.(개정 2005.09.30, 2008.11.13)</p>	<p><b>제11조(설치기준)</b> ①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12조(기능)</b> ① <u>보육정보센터</u>는 영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<u>제7호까지</u>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08.11.13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(개정 2005.09.30, 2008.11.13)</li> <li>2. 시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,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(개정 2005.09.30, 2008.11.13, 2012.5.22)</li> <li>3.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(개정 2005.09.30, 2008.11.13)</li> </ol>	<p><b>제12조(기능)</b> ①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----- -----<u>제9호까지</u>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3.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<b>제13조(구성)</b>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</p>	<p><b>제13조(구성)</b> ①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보육정보센터</u>에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, 영양사,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05.09.30, 2008.11.13, 2009.11.11, 2012.5.22)</p> <p>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보육정보센터</u>의 운영을 영 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 (개정 2005.09.30, 2008.11.13, 2012.5.22)</p> <p>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(개정 2005.09.30, 2008.11.13)</p> <p>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<u>보육정보센터</u> 또는 체험시설(이하 "센터등"이라 한다)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등의 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등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. (개정 2008.11.13)</p> <p>⑤ 센터등의 경우 민간인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08.11.13)</p> <p>⑥ 그 밖에 센터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08.11.13)</p>	<p>-----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-----</p> <p>④ -----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8조(비용의 보조)</b>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05.09.30, 2008.11.13, 2009.11.11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·개축 보수비(개정 2005.09.30, 2008.11.13, 2012.5.22)</li> <li>2. 보육교사 인건비(개정 2005.09.30)</li> <li>3. 교재·교구비(개정 2005.09.30)</li> <li>4. <u>보육정보센터</u> 설치·운영비 (개정 2005.09.30., 2008.11.13)</li> <li>5.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(개정 2005.09.30)</li> <li>6. 시간연장형 보육, 방과 후 보육, 영아·장애아·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(개정 2005.09.30, 2009.11.11)</li> <li>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저</li> </ol>	<p><b>제18조(비용의 보조)</b>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-----</p> <p>4.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 -----</p> <p>5. ~8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(개정 2005.09.30, 2008.11.13)</p> <p>8.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(개정 2005.09.30, 2008.11.13)</p>	